

## 우주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국제법 연구\*

김한택\*\*

### 목 차

- I. 서 언
- II. 국제조약상 ‘평화적 이용’의 의미
- III. 우주법상 ‘평화적 이용’의 의미
- IV. 결 론

\* 이 논문은 필자가 2015년 4월 30일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의 공동세미나」에서 발표한 “우주의 평화적 이용과 국제법”을 수정·보완 한 글임.

\*\*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I. 서 언

1957년 10월 소련이 인류 최초의 인공위성 ‘스푸트니크(Sputnik) 1호’를 발사하였는데, 사실 스푸트니크 1호 발사 2개월 전 소련은 대륙간 탄도미사일(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ICBM)을 발사하여 세계를 놀라게 한 바 있다. 스푸트니크 1호의 무게는 약 83kg으로 미국이 개발하고 있던 유인 인공위성 아틀라스(Atlas)의 8배나 되었다.<sup>1)</sup> 동 사건으로 인해 소련의 로켓기술과 미사일기술이 미국안보에 큰 위협으로 여겨지게 되고, 미국은 소위 ‘스푸트니크 쇼크’(Sputnik Shock)를 받아 미국의 교육제도까지 개선하면서 우주개발에 박차를 가하게 된다.

인류역사상 위성개발은 제2차세계대전시 독일의 V-2로켓<sup>2)</sup>에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V-2로켓은 나치독일의 히틀러 친위대 소령이었던 베르너 폰 브라운(Wernher von Braun, 1912-1977)<sup>3)</sup>에 의해서 개발된 세계 최초의 탄도미사일이며 세계 최초의 준궤도(sub-orbital) 우주비행체였다. 독일 로켓과학자들은 V-2를 무기시스템(미사일)으로 개발한 후 유럽 및 영국의 인구 밀집지역에 투하하여 수많은 사상자를 내었다. 전쟁 후 미군은 독일의 로켓과학자와 사 용가능한 로켓 100기와 수많은 로켓부품, 수 톤에 이르는 과학문서를 독일에서 미국으로 배로 수송하였다. 따라서 V-2 로켓은 미국 우주프로그램의 기초를 제공한 셈이다.<sup>4)</sup>

1957년 11월 소련은 Sputnik-2호를 발사하였는데, 러시아어로 ‘짚는 동물’이라는 뜻의 라이카(Laika)라는 떠돌이 개를 태웠다. 라이카는 발사 후 약 5-7시

1) Clifton Daniel(ed.), *Chronicle of the 20th Century*, Chronicle Publications, 1987, p. 806; 박춘호, “우주개발과 통신위성: 국제법의 추이”, 『정보사회연구』 (1990, 봄), 5면.

2) V는 독일어의 Vergeltungswaffe(보복병기) 라는 뜻이다.

3) 베르너 마그누스 막시밀리안 폰 브라운(Wernher Magnus Maximilian Freiherr von Braun, 1912-1977)남작은 독일 출신의 미국인 로켓 과학자이다. 현 폴란드 지방인 독일 제국 포젠 주에서 태어났으며, 스위스 취리히 지방에서 초등 교육을 받고 자랐다. 나치 독일과 협력하여 V시리즈 로켓을 개발하였는데 그중 V-2 로켓이 가장 유명하다. 나치 독일의 패망 후 미국 항공우주국에서 머큐리 계획, 아폴로 계획의 우주개발을 책임지며 일하다가 1972년 퇴임 후 1977년에 사망했다(위키백과 참조).

4) The Militarisation of Space and the European Space Agency, Campaign for Nuclear Disarmament. Lecture by Bruce Kent, 30th April 2015, [http://www.uk.peacelink.org/gmd/indices/index\\_16.html](http://www.uk.peacelink.org/gmd/indices/index_16.html).

간 후에 캡슐내부의 고온과 우주비행 스트레스로 인해 죽었지만 우주비행동안 신체변화 데이터를 지상으로 전송하여 우주에서 동물이 살 수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다. 이것은 미국에게 앞으로 소련이 인간을 우주로 보내 달과 화성 등 천체를 지배할 것이라는 두려움을 안겨주었다.<sup>5)</sup>

미국은 소련의 두 차례에 걸친 위성발사에 충격을 받아 우주개발에 박차를 가하게 되는데 아이젠하워(Dwight David Eisenhower) 대통령이 전술한 독일의 V-2제작으로 유명한 폰 브라운(Wernher von Braun)으로 하여금 임무를 맡게 하여 1958년 1월 첫 인공위성인 ‘익스플로러(Explorer) 1호’를 발사하고, 1958년 10월 미국은 ‘항공우주국’(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dministration: NASA)을 창설한다. 그 후 미국은 제미니(Gemini) 계획을 성공시키고 마침내 아폴로(Apollo) 계획을 성공시키면서 본격적으로 소련과 우주경쟁을 벌이게 된다. 아폴로 계획은 1961년부터 1972년까지 일련의 유인우주비행탐사 계획인데, 이 계획의 목표는 1960년대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연설에서 언급되었던 “인간을 달에 착륙시킨 후 무사히 지구로 귀환시키는”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 목표는 1969년 7월 미국이 ‘Apollo 11호’를 발사하여 인간이 처음으로 달 표면에서 걸어 다닐 수 있게 함으로써 성공하였는데, 닐 암스트롱(Neil Armstrong)과 에드윈 올드린(Edwin Aldrin)이 달의 ‘고요한 바다’ 위를 거닐고, 조종사 마이클 콜린스(Michael Collins)는 달 궤도에 남아 있었다.<sup>6)</sup> 이렇게 소련과 미국의 우주개발은 달과 화성탐사를 비롯한 우주개척의 의미도 있지만 그 이면에는 항상 우주무기개발이 항상 병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1967년 우주조약 성립 30주년을 기념하고 점검하기 위해 1997년 이태리의 Turin에서 열린 국제우주법학회에서 런던대학교(UCL) 명예교수인 빈첵(Bin Cheng) 교수는 우주시대의 주요관심사 4가지 가운데 가장 우선적 과제로 ‘우주공간의 군비경쟁과 군사적 이용’을 거론하면서 우주강대국이 우주에서의 무기경쟁과 군사적 목적을 위한 이용을 줄이고 규제하기 위해 협력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sup>7)</sup> 특히 현대전에서는 군사위성을 이용하여 전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

5) 스키치 가즈토(이용빈 역), 「우주개발과 국제정치」, 한울 아카데미, 2013, 51면.

6) 김한택, 「국제항공우주법」, 제2판, 와이북스, 2012, 208면, 210면.

7) Bin Cheng, “The 1967 Outer Space Treaty: Thirtieth Anniversary”, *23 Air and Space Law*, No.4/5, 1998, p. 158 *recited from* 이영진, “우주공간의 군사적 이용에 관한 국제법적 규제와 동향”, 「법학연구」 제17권 2호(충북대학교), 2006, 168면.

려는 경향들이 있었다. 예를 들어 1991년 걸프전(Gulf War)에서 지상진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미국은 약 40개의 정보위성을 활용한 바 있다.<sup>8)</sup>

1963년 유엔(UN)은 결의로 채택한 ‘우주법선언’의 원칙 4에서 “우주활동은 유엔헌장과 국제법에 따라 국제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서 및 국제협력과 이해를 위해서 행해져야 한다.”고 함으로서 우주의 탐사이용은 군사적 목적이 아닌 ‘평화적 목적’(peaceful purposes)으로 수행되어야 함을 천명하였다. 그리고 1967년 우주조약 제4조와 1979년 달조약 제3조에서 우주의 탐사이용은 1963년 우주법선언과 마찬가지로 군사적 목적이 아닌 ‘평화적 목적’으로 수행되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우주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표현이 정부의 성명서나 여러 다자조약들에서 발견되지만 이 용어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여 아직 명확한 의미가 정의된 바는 없다. 이 글에서는 ‘우주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용어가 국제법상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지를 살펴보고자 하는데, 우선 국제조약에서는 ‘평화적 이용’이라는 용어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 지 알아보고, 우주관련조약들과 결의 및 연성법상 ‘우주의 평화적 이용’의 의미를 분석하고자 한다.

## Ⅱ. 국제조약상 ‘평화적 이용’의 의미

### 1. 유엔헌장

유엔헌장 제1조 1항에 유엔의 목적에 관하여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고, 이를 위하여 평화에 대한 위협의 방지, 제거 그리고 침략행위 또는 기타 평화의 파괴를 진압하기 위한 유효한 집단적 조치를 취하고 평화의 파괴로 이를 우려가 있는 국제적 분쟁이나 사태의 조정, 해결을 평화적 수단에 의하여 또한 정의와 국제법의 원칙에 따라 실현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유엔헌장 제52조 1항에

8) Bhupendra Jasani, “Military Use of Outer Space”, 27 *Annals of Air and Space Law*(이하 AASL), 2002, p. 361; 인공위성의 군사적 활용에 관하여 강한철, “인공위성에 대한 군사적 활용 및 통제 방안”, 『항공우주법학회지』 제20권 2호, 2005, 159-234면 참조.

“이 헌장의 어떠한 규정도,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관한 사항으로서 지역적 조치에 적합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지역적 약정 또는 지역적 기관이 존재하는 것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약정 또는 기관 및 그 활동이 유엔의 목적과 원칙에 일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명시하고 있다. 특히 유엔헌장 제2조 4항의 “모든 회원국은 그 국제관계에 있어 다른 국가의 영토보전이나 정치적 독립에 대하여 또는 국제연합의 목적과 양립하지 아니하는 어떠한 기타 방식으로든 무력의 위협이나 무력행사를 참가한다.”는 규정은 우주공간에서 타국의 우주비행체나 천체에 있는 각종 시설물에 대해서도 무력위협이나 사용이 금지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 2. 부분적 핵실험 조약

한편 1963년 8월 5일 미국·영국·소련 3국 외무 장관이 모스크바에서 서명하고, 1963년 10월 10일 이들 3개국의 비준서 교환에 의해 발효된 “부분적 핵실험 조약”(대기권·외기권 및 수중에서의 핵무기실험금지조약; *Treaty of Banning Nuclear Weapons Tests in the Atmosphere in Outer Space and Under Water*)<sup>9)</sup>도 제1조에 우주공간에서의 핵실험을 다음과 같이 금지하고 있다. 이 조약은 최초로 우주에서의 핵실험금지를 명시한 조약으로도 기록된다.<sup>10)</sup>

“제1조 (1) 이 조약의 각 당사국은 그의 관할 또는 관리 하에 있는 여하한 장소에서도 다음 환경에서 핵폭발실험 또는 기타 여하한 다른 핵폭발도 금지하며, 방지하며, 또한 실시하지 않는 의무를 진다.

(a) 대기권내, 우주공간을 포함하는 대기권 외 영수(영해) 및 공해를 포함하는 수중,

9) 동 조약은 1963년 8월 5일에 체결되었으며, 그 해의 10월 10일에 발효되었다. 한국도 1964년에 서명·가입하였다.

10) Christopher M. Petras, “The Debate over the Weaponization of Space-A Military-Legal Conspectus”, 28 *AASL*, 2003, p. 178.

(b) 이와 같은 폭발이 그 관할 또는 관리 하에서 행한 국가의 영토 한계 외에 방사능 낙진 (radioactive debris)을 존재시킨 경우에는 기타 모든 환경. 이에 관련해서 본 항목의 규정은 본 조약의 전문에서 당사국이 달성을 요구하고 있는 일체의 지하핵폭발을 포함하는「모든 핵실험폭발의 항구적 금지를 가져오는 조약」의 체결권리를 방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이해된다.

(2) 조약의 당사국은 본조 제1항의 환경 어느 곳에서 실시되거나 또는 동 항에서 언급된 효과를 가지게 되는 모든 지역에서 여하한 핵무기실험폭발 또는 여하한 형태라도 참가하는 것을 보류할 의무를 진다.“11)

### 3. IAEA 규정

또한 1956년 국제원자력기구(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IAEA) 규정 제2조에서 “동 기구는 전 세계를 통하여 평화, 보호 및 번영에 대한 원자력의 공헌을 촉진하고 확대함에 노력한다. 기구는 가능한 한 기구에 의하여 또는 기구의 요청이나 감독 또는 통제 하에 제공된 원소가 군사적 목적을 조장시키는 방법으로 사용되지 않을 것을 보증한다.”12)고 규정하여 원자력의 평화적 사용을 천명하고 있다.

### 4. 남극조약

1959년 남극조약(Antarctic Treaty) 제1조 제1항도 남극지역은 평화적 목적을 위하여서만 이용되어야 하며, 특히, 군사기지와 방비시설의 설치, 어떠한 형태의 무기실험 및 군사훈련의 시행과 같은 군사적 성격의 조치는 금지된다고 규

11) 동 조약과 우주법에 관하여 Nicolas Mateesco Matte, “Treaty of Banning Nuclear Weapons Tests in the Atmosphere in Outer Space and Under Water(10 October 1963) and the Peaceful Uses of Outer Space”, 9 *AASL*, 1984, pp. 391-415 참조.

12) “The Agency shall seek to accelerate and enlarge the contribution of atomic energy to peace, health and prosperity throughout the world. It shall ensure, so far as it is able, that assistance provided by it or at its request or under its supervision or control is not used in such a way as to further any military purpose”

정하고 제2항에 이 조약은 과학적 연구를 위하거나 또는 기타 평화적 목적을 위하여 군의 요원 또는 장비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5조 제1항에 남극지역에서의 모든 핵폭발과 방사선 폐기물의 동 지역에서의 처분은 금지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 핵폭발과 방사선 폐기물의 처분을 포함하는 핵에너지의 이용에 관한 국제협정이 체결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약은 남극의 ‘비핵지대’(Nuclear-Free-Zone)를 설정한 조약으로 1967년 우주조약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 5. 유엔해양법협약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제88조도 공해(high seas)는 평화적 목적을 위하여 보존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88조는 공해가 평화적 목적으로 유보되어야 함을 규정한 것으로 이는 해양의 평화적 사용에 관한 협약 전체를 통하여 전달되는 주요 흐름을 반영한 것이다. 일부 국가, 특히 미국은 ‘평화적 목적’이 일반적으로 군사활동을 배제하지는 않는다고 하면서 평화적 목적의 군사활동은 유엔헌장 및 국제법 원칙과도 일치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제88조의 본래 의미는 서문에서 언급된 평화적 목적의 사용, 즉 모든 국가가 무력행사나 위협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의무를 부과한 조항이라 할 수 있다. 동 협약은 공해상 군사활동을 명백히 금지하지는 않으나, 일반적으로 유엔헌장 및 기타 국제법 규칙과 일치하지 않는 공해의 군사적 사용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 제298조13)는 분쟁의 강제적 해결절차에서 군사활동에 관한 분쟁을 배제시키고 있어 다소 혼란이 야기될 수도 있다. 따라서 유엔헌장에 구현된 국제법 규칙과 일치하는 군사활동은 유엔해양법협약상 금지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집단적 자위권행사에 있어 집단안보협약 당

### 13) 제298조 제2절 적용의 선택적 예외

1. 국가는 제1절에 의하여 발생하는 의무에 영향을 미침이 없이 이 협약 서명, 비준, 가입시 또는 그 이후 어느 때라도 다음 분쟁의 범주 중 어느 하나 또는 그 이상에 관하여 제2절에 규정된 절차중 어느 하나 또는 그 이상을 수락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서면 선언할 수 있다.
  - (b) 군사활동(비상업용 업무를 수행중인 정부 선박과 항공기에 의한 군사활동 포함)에 관한 분쟁 및 주권적 권리나 관할권의 행사와 관련된 범집행활동에 관한 분쟁으로서 제297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재판소의 관할권으로부터 제외된 분쟁.

사국들이 국제법상 규정된 한계 내에서 자국의 군대, 선박 및 항공기 보호를 위해 공해상에서 무력을 행사할 수 있음이 분명하다.<sup>14)</sup>

## 6. 핵확산금지조약

1968년 핵확산금지조약(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NPT)<sup>15)</sup>도 우주의 비핵화문제에 간과할 수 없는 조약인데, NPT는 조약당사국을 핵국가와 비핵국가로 구분하며, 비핵국가에 대해서 어떤 경우에도 핵무기를 제조, 획득, 관리하거나 이양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는 반면, 핵국가에 대해서는 핵무기 이양이나 개발지원만을 금지할 뿐이다. 핵군축에 관한 조치나 조약에 대해서도 아무런 성과가 없으며, 핵확산금지나 핵무기의 완전한 부재도 전혀 실현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이 NPT는 핵보유 국가가 비핵국가의 핵무장을 막기 위한 정책위에 기초하고 있으며, 핵국가와 비핵국가 간의 차별적 구도 위에 세워진 조약이다. 핵확산을 막기 위해 비핵국가들은 핵무기 개발이나 획득이 절대 금지되고 안전조치제도에 의한 사찰을 받아야 하는 반면, 핵국가들은 단지 점진적인 핵무기 감축에 노력하는 것만이 요구되고 있을 뿐이다. 대다수 비핵국가들은 이 조약에서 요구하는 대로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고 평화적 핵 활동에만 전념하고 있으나, 핵국가들은 안전조치라는 명목으로 비핵국가들의 모든 연구 활동을 감시하는 한편, 자국이 보유한 핵무기의 군축을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다는 조약의 맹점이 있다.<sup>16)</sup>

14) 이창위, 김채형, 김한택, 김현수, 박찬호, 이석용 공저, 「유엔해양법해설서 II」, 사단법인 해양법포럼, 2009, 23면.

15) 한국은 1975년에 가입하였다. 북한은 1985년에 가입을 했으나, 1993년에 탈퇴하였다. 전 세계 대부분 국가가 가입해 있으나 핵보유국인 프랑스와 중국은 미·소 위주의 성격에 반발해 최초에는 가입하지 않았다가 1992년이 되어 가입하였으며,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쿠바 등이 미가입국이다. 2015년 현재 190개국 가입국이다.

16) 핵확산금지조약, 위키백과 참조.



## 7. 유엔인간환경회의

한편 1972년 6월 스톡홀름에서 개최된 유엔인간환경회의(United Nations Conference of the Human Environment)는 국제환경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새로운 국제환경법질서로서 시도되었는데, 인간환경문제를 논의하는 스웨덴의 제안에 따라 개최된 이 회의에 모두 113개 국가와 13개 국제기구가 참석하였으며, 환경적 위협에 맞서 전 세계적인 협력을 약속하는 ‘스톡홀름 선언’을 채택한 바 있다. 스톡홀름 선언 원칙 26에 인간과 환경은 핵무기와 다른 대량살상무기의 영향 없이 살아야 하며, 국가는 관련된 국제기구에서 그러한 무기들의 완전 파괴와 제거의 즉각적인 합의에 도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 Ⅲ. 우주법 상 ‘평화적 이용’의 의미

#### 1. 우주관련조약 상 ‘평화적 이용’의 의미

##### (1) 1967년 우주조약

1967년 제정된 “달과 다른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 우주의 탐사 및 이용에 관한 국가활동을 규제하는 원칙조약”(Treaty on Principles Governing the Activities of States in the Exploration and Use of Outer Space, including the Moon and Other Celestial Bodies; 우주조약)<sup>17)</sup> 제4조 전반부에 의하면 당사국은 핵무기 기타 대량파괴무기<sup>18)</sup>를 실은 물체를 지구주위 궤도에 배치할 수 없고 또한 이러한 무기를 우주나 그 천체에 배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1959년 남극조약에 이어 우주의 ‘비핵지대’(Nuclear-Free-Zone)를 형성한다

17) 1967년 10월 13일 한국에 대하여 발효됨, 2015년 1월 현재 회원국 수는 103개국이며 26개국이 서명함.

18) 대량파괴무기로는 일반적으로 원자탄, 세균 및 화학무기를 의미한다.; 박원화·정영진, 「우주법」, 제3판, 한국학술정보(주), 2012, 113면.

는 의미로 파악할 수 있다. 여기서 우주에서의 재래식 무기의 사용은 가능한가 하는 질문이 가능한데, 대부분 학자들은 제4조가 핵무기 기타 대량파괴무기만을 언급하고 있으므로 우주에서의 재래식 무기의 사용은 가능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기타의 군사적 이용문제에 관하여는 외기권 공간으로서의 우주와 그 안에 있는 천체를 구별하여 천체에 대하여만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천체(celestial bodies)의 정확한 의미에 관하여 문제가 제기되는데, 운석(meteorite) 혹은 혹성(asteroid) 또는 미소월(微小月, small moon)은 이 명칭에 의한 제한을 받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현재 이 문제가 실제로 중요성은 없다고 생각되지만 장래의 기술발전이 과학계를 자극하여 정확한 정의를 내릴 것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sup>19)</sup>

우주조약 제4조 후반부에 의하면 달과 다른 천체는 오로지 ‘평화적 목적’에 사용하여야 한다. 군사기지나 시설의 설치, 무기실험, 군사기동훈련을 천체 상에서는 일체 수행할 수 없다. 다만 과학적 목적이나 다른 평화적 목적을 위하여 군인을 이용하거나 필요한 장비 및 시설을 사용하는 것은 금지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4조의 ‘평화적 목적’의 의미에 관하여 소련은 ‘비군사적’(non-military)으로 파악하고 있는 반면에 미국은 우주의 군사적 이용은 ‘비침략적’(non-aggressive)인 목적에만 국한되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다.<sup>20)</sup> 이 이론에 따르면 모든 우주의 군사적 이용은 그것이 유엔헌장 제2조 제4항에서 언급한 ‘위협이나 무력의 사용’(threat or use of force)의 기준에 따라서 비침략적으로 판단되는 한 허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은 군요원의 경우 달과 다른 천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고, 그 이용이 비공격적이고 군사기지의 설치나 무기실험, 군사작전의 수행이 제한된다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다.<sup>21)</sup>

한편 유엔에서 1950년 이래 ‘침략의 정의’(Definition of Aggression)가 중요과제로서 제기되었는데, 1953년에는 특별위원회가 설치되었고, 유엔총회의 ‘침략

19) E. R. C. van Bogaert, *Aspects of Space Law*, Kluwer Law and Taxation Publishers 1986, p. 68.

20) Bin Cheng, "The Legal Status of Outer Space and Relevant Issues: Delimitation of Outer Space and Definition of Peaceful Use", *11 Journal of Space Law*(이하 JSL), 1983, pp. 89, 99.

21) Carl Q. Christol, *The Modern International Law of Outer Space*, Pergamon Press, 1982, 29; 김한택, "우주조약의 국제법적 의미에 관한 연구", 「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제28권 2호, 2013, 242-243면.

정의특별위원회'가 1967년부터 7년 동안의 작업 끝에 1974년 4월 12일 침략의 정의 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마침내 1974년 12월 14일 제29차 유엔총회는 동 특별위원회가 작성한 '침략의 정의' 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sup>22)</sup> 1974년 '침략의 정의' 결의는 전문과 8개조로 구성되는데, 제1조에 "침략은 어느 국가가 타국의 주권, 영토 보존 또는 정치적 독립에 대해 무력을 사용하거나 또는 본 정의에 규정된 유엔헌장에 위배되는 기타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제3조 제1항에 "병력에 의한 타국영역의 침입. 공격 또는 이와 같은 결과를 발생시키는 군사점령 및 무력행사에 의한 타국 영역의 병합"을 포함하여 아래와 같은 7개항을 규정하고 있다.

- 병력에 의한 타국영역에 대한 침입 혹은 공격, 그 결과로서 발생한 군사점령 또는 무력행사에 의한 타국영역의 합병,
- 병력에 의한 타국영역에 대한 폭격, 기타 무기의 사용,
- 병력에 의한 타국의 항구 또는 연안의 봉쇄,
- 병력에 의한 타국의 육해공군 또는 상선대 및 항공대에 대한 공격,
- 합의에 기초한 타국 내에 있는 병력의 체류 조건에 반한 사용, 또는 기간을 넘는 체류의 계속,
- 제3국의 침략행위를 위한 자국영역의 사용을 용인,
- 상기에 상당하는 무력행사를 하는 무장부대, 집단, 비정규군 혹은 용병의 파견, 또는 이러한 행위에 대한 국가의 실질적 관여이다.<sup>23)</sup>

1967년 우주조약에 규정된 평화적 이용조항은 달과 다른 천체에만 적용될 뿐이지 일반적으로 우주전체(outer space in general)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이 조항을 근거로 우주를 통과하여 지구 내 일정지점을 타격하는 핵장착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실험이 방해받지는 않는다고 해석된다.<sup>24)</sup> 스위스의 Fribourg 대학교 Marko G. Marckoff 교수도 ICBM과 지구선회우주선의 부분궤도폭격체제(Fractional Orbital Bombardment System; FOBS)<sup>25)</sup>의 사용이 핵무기

22) UNGA Res. 3314(XXIX).

23) 김한택, 「국제법원론-이론과 실제-」, (주) 북스힐, 2015, 365면.

24) van Bogaert, op. cit., p. 68.

와 대량파괴무기를 적재하지 않은 한 금지되지 않는다고 한 바 있다.<sup>26)</sup> 다시 말해서 위성공격무기(Anti-satellite; ASAT)와 탄도미사일방어(Ballistic Missile Defense; BMD)는 금지하지 않고 있으며 미국과 소련이 지금까지 이 두 종류의 무기개발에 관하여는 합법적이라는 견해에 상호 동의해왔고, 소련이 비록 우주의 ‘비군사화’(non-military)를 주장하였어도 사실 미국과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우주에 군사위성(military satellites)<sup>27)</sup>을 쏘아 올렸다는 점이 이를 증명해주고 있다.<sup>28)</sup> 이러한 소련과 미국의 관행은 결국 우주의 비군사화를 막지 못했으며 결국 이러한 문제점은 ‘우주에서의 무기경쟁방지를 위한 군축회의 임시위원회’(Ad Hoc Committee on the Prevention of an Arms Race in Outer Space of the Conference on Disarmament)에서도 언급되었다(UN Doc. CD/1165 of 12 August 1992).<sup>29)</sup>

한편 적의 위성을 파괴하기 위해서 혹은 주파수를 교란시키거나 설비에 손해를 주어서 기능을 마비시켜 그러한 위성들을 무용한 것으로 만들기 위한 위성요격기술(satellite interception techniques)도 개발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활동이 우주조약의 규정과 모순되는가 하는 문제의 해답은 조건 여하에 달려있다. 요격행위를 위한 장비가 핵무기 혹은 대량파괴무기를 장치했다면 그것이 궤도에 오를 때에는 위법한 것으로 판단되어야 한다.<sup>30)</sup> 또한 우주기지(또는 우주정거장, space stations)를 궤도에 올리는 것은 조약상의 금지를 위반한 행위는 아니다.

25) FOBS는 핵탄두가 장착된 부분궤도 폭격체계.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처럼 탄도(彈道)를 비행하지 않고 인공위성처럼 지구궤도 위를 돌다가 표적근처 상공에서 감속(減速) 로켓을 분사하여 대기권에 재돌입한 다음 지상에 떨어져 폭발한다.

26) Marko G. Marckoff, “Disarmament and “peaceful purposes” provisions in the 1967 Outer Space Treaty”, 4 *Journal of Space Law*, 1976, p. 4.

27) 군사위성은 기능에 따라 정찰위성, 탄도미사일 발사의 조기탐지·경보 및 핵폭발의 탐지를 실행하는 조기경보위성, 군사통신위성, 함정의 전천후 운항을 지원하는 군사항법위성, 미사일 발사를 탐지하여 지상에 알리는 미사일탐지위성, 지상이나 공중에서 실시된 핵실험을 탐지하는 핵폭발 탐지위성, 본국과 다른 국가에 가 있는 주둔군이나 항공기 등과 통신연락을 하는 데에 사용되는 군사통신위성, 해군, 공군이 잠수함이나 항공기에 정확한 위치를 알리는 항행위성, 탄도미사일의 목표를 선정하거나 대륙간의 거리를 정밀하게 측정하는 측량위성, 군용항공위성, 전자정보위성, 해양감시위성 등이 있다(군사위성에 관하여 위키백과 참조); He Qizhi, “Militarization of Outer Space”, 9 *AASL*, 1984, p. 440.

28) Ram Jakhu, “Legal Issues Relating to the Global Public Interest in Outer Space”, 32 *JSL*, 2006, p. 85.

29) Background Paper “Peaceful” and Military Uses of Outer Space: Law and Policy, Institute of Air and Space Law, Faculty of Law, McGill University, Montreal, Canada, February, 2005, p. 3.

30) van Bogaert, op. cit., p. 69.

그것은 그 유인기지의 인원과 설비의 여하에 달린 것이다. 만약 이러한 우주물체들이 핵무기 또는 기타의 대량파괴무기를 운반하고 있다면 그것들을 궤도에 올리는 것은 명백하게 위법행위이지만, 이와 같은 종류의 우주장치는 평화적 목적에도 사용될 수 있으며, 그러한 임무는 우주공간의 군축규칙에 위반되지는 않는다. 1988년 국제우주정거장(ISS) 협정<sup>31)</sup> 제1조 제1항에서도 국제우주정거장이 국제법에 따라서 평화적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sup>32)</sup>

1967년 우주조약 제9조는 우주활동으로 인한 환경피해의 방지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 조항 역시 우주가 군사적 실험이나 군사목적으로 이용되지 말 것을 암시하고 있다.<sup>33)</sup> 즉,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우주의 탐색과 이용에 있어서 당사국은 협조와 상호 원조의 원칙에 따라야 하며, 다른 당사국의 상응한 이익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우주에 있어서의 그들의 활동을 수행하여야 하며, 당사국은 ‘유해한 오염’(harmful contamination)을 회피하고 또한 물질의 도입으로부터 야기되는 지구 주변에 ‘환경의 불리한 변화’(adverse changes in the environment)를 가져오는 것을 회피하는 방법으로 달과 천체를 포함한 우주의 연구를 수행하고, 이들의 탐색을 행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이 목적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appropriate measures)를 취하여야 한다. 만약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우주에서 국가 또는 그 국민이 계획한 활동 또는 실험이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우주의 평화적 탐색과 이용에 있어서 다른 당사국의 활동에 잠재적으로 ‘유해한 방해’(harmful interference)를 가져올 것이

31) AGREEMENT AMONG THE GOVERNMENT OF CANADA, GOVERNMENTS OF MEMBER STATES OF THE EUROPEAN SPACE AGENCY, THE GOVERNMENT OF JAPAN, THE GOVERNMENT OF THE RUSSIAN FEDERATION,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CONCERNING COOPERATION ON THE CIVIL INTERNATIONAL SPACE STATION.

32) 1. The object of this Agreement is to establish a long-term international cooperative framework among the Partners, on the basis of genuine partnership, for the detailed design, development, operation, and utilization of a permanently inhabited civil international Space Station for peaceful purposes,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law. This civil international Space Station will enhance the scientific, technological, and commercial use of outer space. This Agreement specifically defines the civil international Space Station program and the nature of this partnership, including the respective rights and obligations of the Partners in this cooperation. This Agreement further provides for mechanisms and arrangements designed to ensure that its object is fulfilled.

33) 우주조약 제9조의 제정과정에 관하여 Howard A. Baker, "Protection of the Outer Space Environment: History and Analysis Article IX of the Outer Space Treaty", 2 *Annals of Air and Space Law*, 1987, pp. 143-71 참조.

라고 믿을 만한 이유를 가지고 있는 당사국은 이러한 활동과 실험을 행하기 전에 적절한 국제적 협의를 거쳐야 한다.

이 조항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의무사항으로 요약될 수 있는데, 첫째, 다른 국가의 이해관계에 합치되는 우주활동을 수행하고, 둘째, 유해한 오염 및 불리한 변화를 회피하도록 우주공간을 연구 및 탐사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채택하며, 그리고 마지막으로 타국의 우주활동에 유해한 간섭을 잠재적으로 야기할 수 있는 경우에 협의해야 할 의무 등이 그것이다.<sup>34)</sup>

우주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조항은 우주조약 제11조에서도 발견되는데 우주의 평화적 탐색과 이용에 있어서의 국제적 협조를 증진하기 위하여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에서 활동을 하는 본 조약의 당사국은 동 활동의 성질, 수행, 위치 및 결과를 실행 가능한 최대한도로 일반대중 및 국제적 과학단체 뿐만 아니라 유엔사무총장에 대하여 통보하는데 동의하고, 동 정보를 접수한 유엔사무총장은 이를 즉각적으로 그리고 효과적으로 유포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2) 달조약

1979년 제정된 “달과 다른 천체에 관한 국가활동을 규율하는 협정”(Agreement Governing the Activities of States on the Moon and Other Celestial Bodies: 달조약)<sup>35)</sup>도 제3조에 당사국은 달 주위의 궤도나 달에 이르는 기타의 궤도 또는 달 주위에 핵무기나 기타의 대량파괴무기를 탑재한 물체를 배치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달조약 제3조에서 1967년 우주조약에서 볼 수 없는 표현인 달에서 무력의 사용과 위협은 물론 ‘다른 적대행위나 적대행위의 위협’(any other hostile act or threat of hostile act)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 표현은 1977년 “환경수정기술에 관한 제네바 협약”에 나오는 ‘그와 같은 기술의 군사적 사용이나 어떠한 적대적 이용’(military or any hostile

34) Nicolas M. Matte, “Environmental Implications and Responsibilities in the Use of Outer Space”, *14 AASL*(1989), pp. 428-429; 박원화, “우주의 군사적 이용에 관한 법적 고찰”, 『국제법학회논총』 제36권 1호(통권 제69호), 1991, 152면.

35) UNGA Resolution 34/68, 5 December 1979; 한국 미가입, 2015년 4월 현재 회원국수는 13개국이며 4개국이 서명함.

use of such techniques)이라는 표현과 유사하다.<sup>36)</sup> 한편 달조약 제1조 1항은 “이 협정의 달에 관한 규정은 지구를 제외한 태양계내의 기타 천체에도 적용된다. 단 지구를 제외한 태양계내의 기타 천체 어느 것에 대하여 특별법규범이 효력을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달조약이 ‘태양계내의’(within the solar system) 지구를 제외한 달과 천체에 적용된다면 1967년 우주조약은 태양계내의 지구를 제외한 달과 천체는 물론 ‘태양계 밖의’(outside the solar system) 천체까지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sup>37)</sup>

### (3) 환경수정기술에 관한 제네바 협약

1977년 “환경수정기술에 관한 제네바 협약”(원 명칭은 “환경변경기술의 군사적 또는 다른 적대적 이용에 관한 금지 협약”, Convention on the Prohibition of Military or any Other Hostile Use of Environmental Modification Techniques)<sup>38)</sup>은 1970년대 월남전 당시 북베트남군과 베트남(Viet Cong)이 호지민통로(Ho Chi Min trail)를 따라서 적군의 진입을 방해하거나 우군을 지원하기 위해 울창한 밀림이나 식물을 이용하는 방법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미군이 사용한 밀림벌채(deforestation)에 대응하기 위하여 그리고 일반적으로 환경에 대한 자각에서 만들어진 조약이다.<sup>39)</sup>

동 협약은 환경 변화를 초래하는 기술, 예를 들면 태풍의 진로 전환, 강우제 또는 강설제를 이용한 기상변화 유도 등 첨단 환경변경기술 뿐만 아니라 재래식 환경변경기술을 군사적 또는 적대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환경변경기술 사용에 의한 대량의 환경파괴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채택되었는데, 동 협약 제2조<sup>40)</sup>에서 우주공간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1967년 우주조약 제4조를 보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sup>41)</sup> 동 협약은 당사국, 당사국 국가군

36) Bin Cheng, *Studies in International Space Law*, Clarendon Press·Oxford, 1997, p. 413; 김한택, “달조약의 의미와 전망에 관한 연구”, 『항공우주법학회지』, 제21권 1호, 2006, 220면.

37) H. A. Wassenbergh, *Speculations on the Law Governing Space Resources*, 5 *AASL*, 1980, p. 617.

38) 16 *International Legal Materials*, 1977, p. 88; 1986년 12월 2일 한국에 대하여 발효.

39) Petras, op. cit., p. 194.

40) “As used in article 1, the term ‘environmental modification techniques’ refers to any technique for changing-through the deliberate manipulation of natural processes-the dynamics, composition or structure of the Earth, including its biota, lithosphere, hydrosphere and atmosphere, or of outer space.”

또는 국제기구가 다른 당사국에 파괴, 손상 또는 위해를 가하기 위한 수단으로 광범위하거나, 장기적이거나 또는 극심한 효과를 미치는 환경변경기술을 군사적 또는 기타 적대적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돕거나 고무하거나 권유하지 않도록 함으로서 군사 또는 적대적 목적의 환경변경기술을 사용하지 않을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협약은 평화적 목적의 환경변경기술 사용을 저해하지 않으며, 그러한 용도로 사용하는 것과 관련된 법이 일반적으로 승인하는 원칙과 적용 가능한 규칙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으로서 평화적 목적의 환경변경기술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협약은 당사국에게 평화적 목적의 환경변경기술의 사용에 관한 과학기술정보를 가능한 최대한 교환·촉진토록 하고, 이에 참여할 권리를 부여함으로서 평화적 목적의 환경변경기술 사용을 추구하는 당사국은 단독으로 또는 다른 국가나 국제기구와 함께 세계의 개발도상지역의 필요를 적절히 고려하여 환경의 보존, 개선 및 평화적 이용에 있어서 국제적 경제 과학협력에 이바지 할 것을 촉구하였다.<sup>42)</sup>

## 2. 유엔결의 및 연성법상 ‘평화적 이용’의 의미

1974년 11월 12일 유엔총회는 총회의 ‘선언’(declaration)과 ‘결의’(resolution)는 국제법의 발전에 반영될 수 있는 방법으로서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의해서 고려되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sup>43)</sup> 이러한 국제기구의 결의나 행동규범(codes of conduct), 실행규범(codes of practice), 리우선언의 아젠더 21(Agenda 21)같은 행위계획(action plans) 등은 엄격하게 구속력을 가진 것도 아니고 전혀 법적 의미가 없는 것도 아닌 ‘연성법’(軟性國際法, soft law)이라고 부른다.<sup>44)</sup>

41) 김종복, 「신우주법」, 한국학술정보(주), 2011, 94-95면.

42) 김한택, 「국제환경조약법」, 강원대/환경부, 2011, 303-306면 참조.

43) Preamble, UNGA Res. 3232(XXIX), November 12, 1974.

44) Seidl-Hohenveldern, *International Economic "Soft Law"*, 163 Hague Recueil, 1979, pp. 165, 194-213.



### (1) 1963년 우주법선언

1957년 소련의 Sputnik 1호가 발사되자 그 해 11월 유엔결의 1148(XII)를 통하여 ‘우주는 절대적으로 평화적이고 과학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언급하고,<sup>45)</sup> 1963년 12월 13일 유엔총회는 ‘우주활동을 규제하는 법원칙 선언’을 채택하게 되었는데, 이 결의의 정식 명칭은 “외기권 우주의 탐사 및 이용에 관한 국가들의 활동을 규제하는 법원칙 선언”(Declaration of Legal Principles Governing the Activities of States in the Exploration and Use of Outer Space; 우주법선언)<sup>46)</sup>이다. 1963년 우주법선언 원칙 4에서 “우주활동은 유엔헌장과 국제법에 따라 국제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서 및 국제협력과 이해를 위해서 행해져야 한다.”고 함으로서 우주의 탐사이용은 ‘평화적 목적’(peaceful purposes)으로 수행되어야 함을 천명하였다.

### (2) NPS 원칙

1978년 Cosmos 954 사건<sup>47)</sup> 직후 캐나다 정부는 유엔사무총장에게 이 사실을 알렸으며, 1978년 2월 13일부터 3월 2일까지 진행되었던 회기에서 ‘외기권 우주의 평화적 위원회’(Committee on the Peaceful Uses of Outer Space; COPUOS)의 ‘과학기술소위원회’(Scientific and Technical Sub-Committee)는 우주에서 핵에너지사용의 결과를 전반적으로 검토하였다.<sup>48)</sup> 이 문제가 COPUOS

45) 박헌복, “우주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경성대학교, 제22집 1호, 2006, 310면.

46) UN Resolution 1962(XVIII), 13 December 1963.

47) 소련(USSR)은 1977년 9월 18일 50kg의 우라늄연료를 사용하는 핵원자로(nuclear reactor)를 탑재한 5톤 무게의 정찰용 인공위성 Cosmos 954를 발사하였는데, 1978년 1월 25일 이 위성은 기능부전을 일으켜 원래 계획했던 궤도로 진입하지 못하고 다시 지구의 대기권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었다. 동 위성은 캐나다 영공에 진입하여 분해되고 그 잔해가 캐나다 북서부지역 Great Slave 호수를 둘러싼 여러 곳과 그곳에서 Baker 호수를 향해 북동쪽에 떨어졌는데, 그 면적은 오스트리아의 크기에 상당하였다. Cosmos 954의 잔해에 대한 청소작업과 복구작업에 미국의 카터 대통령이 캐나다 수상 튀르도(Turdeau)에게 즉각적인 기술적 도움을 주겠다고 함으로써 1978년 10월까지 진행되었는데, 500 마일에 이르는 영역에서 약 60여개의 방사능오염지역이 포착되었다. 이 작업을 통하여 2개의 파편이 방사능물질임이 확인되었다. 이 지역은 인구가 밀집된 곳이 아니므로 다행히 인명이나 재산의 피해는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1981년 4월 2일 캐나다 대사와 소련 외무차관사이에 공식적인 의정서가 체결되었는데, 동 의정서는 Cosmos 954 사건으로 발생한 모든 문제에 대하여 소련이 캐나다에게 3백만 캐나다 달러를 지급함으로써 완전히 배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한택, “국제우주법상 분쟁해결에 관한 연구”, 『안암법학』 통권 제41호, 2013, 221-222면.

48) van Bogaert, op. cit., p. 249.

에 제기된 것은 이 사건에 의해서만 유래된 것은 아니었고 다만 이전에는 1972년 책임협약과 관련해서만 논의되었을 뿐이었다.<sup>49)</sup> 1992년 12월 14일 총회결의 47/68인 “우주에서의 핵원료 사용에 관한 원칙”(Principles Relevant to the Use of Nuclear Power Sources in Outer Space)<sup>50)</sup>이 유엔총회의 결의를 통하여 표결 없이(without vote) 채택되었다. 이 원칙도 우주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사항들을 다음과 같이 포함하고 있다

동 원칙은 총 11개의 조항으로 이루어졌는데, 전문에서 유엔총회는 COPUOS의 제35차 보고서와 동 위원회에서 승인된 “우주에서의 핵원료 사용에 관한 원칙”을 고려하여 채택된 것임을 밝히고 있고, 원칙 제1에서 우주에서의 핵원료 사용은 유엔 헌장 및 1967년 우주조약을 포함한 국제법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원칙 제5에서는 핵원료를 사용하는 우주물체를 발사한 국가는 동 물체가 기능부전으로 인하여 재진입시 지구에 방사능물질을 누출할 위험이 있는 경우, 반드시 적절한 시기에 관계국가에 발사체의 제원(諸元) 및 핵원료에 관한 정보를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칙 제6은 국가들 간의 추가 정보에 관한 협상과 요구에 관한 규칙을 제시하고 있다. 원칙 제7은 국가에 대한 원조를 규정하고 있는데, 핵원료를 탑재한 우주물체를 발사하고 우주관제 및 추적시설을 갖춘 모든 국가는 동 물체가 대기권에 예상대로 재진입했다는 정보를 통지한 후, 유엔사무총장과 다른 관계국가에게 가능한 조속하게 기능부전으로부터 얻은 정보를 국제협력의 정신에 따라 교환해야 한다. 이것은 동 물체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지 모르는 국가들에게 이로 인한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며, 필요한 사전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발사체의 재진입후에 발사국은 즉각적으로 실제적인 또는 가능한 위해를 제거하기 위한 필요한 원조를 제공해야 한다.<sup>51)</sup> 또한 원조를 제공함에 있어서 개발도상국들의 특별한 필요성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원칙 제8에서는 1967년 우주조약 제6조에 따라서 발사국이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원칙 제9에서는 1967년 우

49) I. H. Ph Diederiks-Verschoor and V. Kopal, *An Introduction to Space Law*, 3rd revised ed., Wolster Kluwer Law and Business, 2008, p. 102.

50) Report of the Committee on the Peaceful Uses of Outer Space, U.N.GAOR 47th Session, Supp. No.20, A/47/20, 25.

51) Joseoh A Bosco, “International Law Regarding Outer Space-An Overview”, *55 Journal of Air Law and Commerce*, 1990, pp. 646-647.

주조약 제7조와 1972년 책임협약의 규정에 따라서 발사국은 국제적인 책임을 질 것과 국제법 및 정의와 형평에 따라서 배상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원칙 제9는 1972년 책임협약 제7조를 책임에 관련된 조약으로 언급하면서 책임문제와 배상문제를 다루고 있다. 원칙 제10은 이와 같은 원칙의 적용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을 다루고 있고, 유엔헌장에 따른 협상이나 다른 기존의 절차를 통한 해결을 모색하고 있다.<sup>52)</sup>

### (3) PPWT(우주에서의 무기배치와 우주물체에 대한 무력의 위협이나 사용금지조약안)

최근에는 ‘우주의 군사화’(militarisation of outer space)와 ‘우주의 무기화’(weaponisation of outer space)가 구분되어 사용되고 있는데, ‘우주의 군사화’란 GPS(Global Positioning System, 위성항법장치)를 이용하여 군인들이 자국위성을 통제하고, 교신하고, 모니터링, 조기경보, 항행에 우주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며, 이는 우주에 통신위성이 발사된 이후 국가들 사이에서 일반화된 것이다. 반면에 ‘우주의 무기화’란 “우주궤도에 파괴력을 갖춘 우주무기를 배치하는 것”(Weaponization of outer space is generally understood to refer to the placement in orbit of space-based devices that have a destructive capacity) 또는 “우주에 위치한 목표물을 지상에서 공격하기 위하여 공격성 무기를 배치하는 것”(the deployment of weapons of offensive nature on the ground with their intended target located in space)으로 이해된다.<sup>53)</sup> 우주무기화를 우려한 중국과 러시아는 2008년 2월 12일 유엔총회 군축특별회기(UN General Assembly’s Special Session)가 위임한 군축회의(Conference on Disarmament; CD)에 “우주에서의 무기배치와 우주물체에 대한 무력의 위협이나 사용금지조약안”(Draft Treaty on the Prevention of the Placement of Weapon in Outer Space and of the Threat or Use of Force against Outer Space Objects; PPWT)<sup>54)</sup>을 공동으로 제기한 바 있다.

52) Diederiks-Verschoor & Kopal, op. cit., p. 105; 김한택, “우주에서의 핵연료(NPS)사용과 우주법”, 「항공우주법학회지」 제22권 1호, 2007, 37-38면.

53) Frans von der Dunk with Fabio Tronchetti(eds), *Handbook of Space Law*, Edward Elgar Publishing, 2015, pp. 333-334.

54) CD/1839, 29 February 2008.

PPWT 조약안의 주요 목적은 제2항에서 조약 가입국은 지구 주위 궤도에 어느 형태의 무기도 배치하지 않고, 천체에도 그러한 무기를 배치하지 않으며, 우주물체에 대해 어떤 위협이나 무력의 사용을 가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제6항에서는 조약 가입국은 조약과 일치하는 범위 내에서 국제 안보, 군축 분야에서 특정 지역이나 공역에서의 평화와 안보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일종의 국제 규범인 ‘투명성 및 신뢰 구축 조치’(Transparency and Confidence Building Measures in Outer Space Activities, 이하 TCBMs)<sup>55)</sup>을 자발적으로 준수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가 공동 제안한 PPWT 조약안에 가장 큰 우려와 반대를 표명한 것은 미국이다. 미국이 반대한 첫 번째 이유는 PPWT 조약안이 배치를 금지하고 있는 무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PPWT 조약안이 현재 타 국가의 우주물체에 가장 위협이 되는 군사적 활동인 위성공격용(Anti-Satellite) 무기를 포함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참고로 중국은 2007년 자국 위성을 요격하는 위성공격용 무기 시험을 실시하여 국제사회에 비난을 받아왔다.<sup>56)</sup>

미국이 PPWT 조약을 반대한 두 번째 이유는 군축 혹은 무기통제조약에서 가장 중요한 조약의 이행에 관한 입증(verification) 절차가 없다는 것이다. 주로 일정 형태의 무기 배치를 금지하는 무기통제조약은 그 무기의 소지, 시험, 생산, 저장 등을 함께 금지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확인함으로써 가입국이 갑작스럽게 조약을 어기고 해당 무기를 배치할 가능성을 낮추고 있는데 반해, PPWT 조약안은 그러한 절차를 명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는 것이다.<sup>57)</sup>

55) 우주분야의 적용과 관련하여 다른 국가의 군사 및 안보 목적의 우주활동은 다른 국가에 불신, 우려, 오해, 판단 착오를 불러일으켜 국가 간의 불필요한 군비 확장과 돌발적인 물리적 충돌을 발생시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 간의 군사 및 안보 목적의 우주활동에 관한 소통과 정보 교류를 촉진하는 규범적 성격의 TCBMs을 두어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호이해를 높이는 것이다. TCBMs은 국제조약을 보완하거나 향후 국제조약으로 발전시키는 단계에서 사용되며 자발적(voluntary) 참여를 바탕으로 하고 법적구속력이 없다.

56) 2007년 1월 11일 중국은 위성공격용 탄도미사일로 약 853km 상공의 자국위성을 격추시켜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을 긴장시킨 바 있다. 이는 미국과 러시아만이 가지고 있던 ASAT기술을 중국도 보유하게 된 것이다(조선일보 2007년 1월 19일자 참조).

57)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정책협력센터 정책분석팀, “우주안보와 군축에 관한 UN 보고서: G.G.E., SPACE ISSUE”, No. 16, November 7, 2014.

#### (4) 헤이그 탄도미사일 비확산 행동규범(HCoC)

미사일 기술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사일기술통제체제’(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 MTCR)가 있는데 이는 34개국이 가입한 미사일 기술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조약이다. 1987년 4월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영국, 미국에 의해 조약이 만들어졌으며 Richard H. Speier 박사가 조약안을 작성하였다. 원래는 탄두중량 500kg에 사거리 300km를 초과하는 ‘핵무기’를 위한 무인운반시스템의 확산을 막기 위해 만들어졌으나 1992년 7월에 오슬로에서 열린 연차 회담에서, 탄두중량 500kg에 사거리 300km를 초과하는, ‘모든 대량살상무기’를 위한 무인항공기(Unmanned Aerial Vehicle; UAV)의 기술수출을 금지하는데 동의하였다. “MTCR 장비, 소프트웨어, 기술 부속서”에서 두 가지 카테고리로 나누어져서 세부적인 규제를 하고 있는데, 미사일기술통제 체제는 탄도미사일에 대해서는 사거리 300km, 탄두 중량 500kg으로 제한하나, 순항미사일에 대해서는 탄두 중량 500kg 이하만 요구할 뿐 사거리는 제약하지 않는다. 핵탄두의 최소 중량이 500kg이기 때문에 이러한 제약이 생겨났다. 한국은 2001년 3월 26일에 가입하여 33번째 회원국이 되었다.<sup>58)</sup>

한편 MTCR이 미사일기술을 확보하려는 수요자에 대한 규제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고 판단되어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2002년 “헤이그 탄도미사일 비확산 행동규범”(Hague Code of Conduct against Ballistic Missile Proliferation; HCoC)이 채택되었는데 2014년 7월 현재 137개국이 가입하였다.<sup>59)</sup> 이 규범의 성격은 법적구속력이 없는 정치적 공약으로서 자발적이며, 모든 국가에 개방되어 있다. 동 규범의 내용을 살펴보면 탄도미사일 확산 방지 및 억지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신뢰구축을 위해 탄도미사일 및 우주발사체(Space Launch Vehicle; SLV)와 관련하여 투명성 제고 및 조치의 필요성을 인정하며, 탄도미사일 비확산을 위한 국제노력에 동참하고, 탄도미사일 개발, 실험 및 배치 등을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다. 대량파괴무기를 개발·획득중인 국가에 대해서는 탄도미사일 개발 프로그램 지원을 금지하며, 탄도미사일 및 우주발사체의 개발 프로그램 정보를 매년 공개하고, 발사사전통보(pre-launch notifications)를 이행하는 것이

58) 미사일기술통제체제, 위키백과참조.

59) 박원화·정영진, 전계서, 70면.

다. 동 규범에 한국을 비롯한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일본, 독일, 이태리, 호주, 캐나다, 네덜란드 등은 서명하였으나 중국, 인도, 파키스탄, 북한, 이란, 이스라엘 등은 아직 서명하지 않고 있다.

### (5) 우주활동에 관한 국제행동규범(ICoC)

2010년 9월 유럽연합(EU)는 우주활동의 장기지속가능성·안전·안보를 보장할 필요를 느끼고 우주폐기물의 증가를 우려하여 2008년 8월 우주활동행동규범의 초안을 작성하고, 주요 우주활동국과의 협의 및 의견을 수렴한 후 우주활동행동규범의 수정초안(the revised draft for a Code of Conduct for Outer Space Activities)을 채택하였다. 2012년 6월 다자전문가회의 개최한 후, 우주활동국제행동규범(Draft International Code of Conduct for Outer Space Activities)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제1차(2013.5, 키예프), 제2차(2013.11, 방콕), 제3차(2014.5, 룩셈부르크) 조정회의를 개최하여 ICoC를 수정하였으며 조정회의를 1차례 더 개최한 후 2015년 말 경 외교회의를 개최하여 ICoC를 최종 채택할 예정이다.

ICoC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ICoC는 그 목적을 모든 우주활동의 안전·지속가능성을 강화하고 정부 간 국제기구, 서명국 및 서명국 관할권 하의 비정부 기관에 의해 발사된 모든 우주물체를 포함한 우주활동을 다루며, 명성과 신뢰구축 조지에 기여하며 기존 규범에 대한 보충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한다. 유엔헌장에 따라 서명국은 개별적 또는 집단적 자위권의 고유한 권리, 우주활동에서 해로운 간섭의 예방을 위해 신의성실에 따라 협력, 과학적·상업적·군사적 활동의 수행에서 우주의 평화적 탐사와 이용의 촉진과 우주의 분쟁지역화를 예방하며 기존 우주활동 관련 규범을 준수한다. 우주운영조치로 타국 활동에 대한 해로운 간섭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과 절차를 수립 및 시행하고, 우주물체의 피해 및 파괴를 의도하는 모든 직·간접적 행위의 자제하며, 우주물체 충돌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한다. 우주폐기물의 통제 및 경감조치로 우주물체의 의도적 파괴 또는 장기 잔존 우주폐기물을 야기하는 활동을 자제하고, UNCOPUOUS의 “우주폐기물감축 가이드라인”(UN Space Debris Mitigation Guidelines)의 이행을 위해 적절한 정책과 절차 또는 다른 효과적인 조치를 채택하고 이행한다. 우주의 활동 통지로 서명국은 자국의 우주활동에 잠재적으로 영향을 받는 모든 국가에게 관련정보를 통지한다.<sup>60)</sup>

## IV. 결론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31조는 조약해석의 일반규칙에 관하여 제①항에 “조약은 조약문의 문맥 및 조약의 대상과 목적으로 보아, 그 조약의 문면에 부여되는 통상적 의미에 따라 성실하게 해석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제②항에 조약의 해석 목적상 문맥은 조약문에 추가하여 조약의 전문 및 부속서와 함께 조약의 해석에 관한 당사국의 합의를 확정하는 그 조약 적용에 있어서의 ‘추후의 관행’(subsequent practice)이 고려될 것을 포함하고 있다. 국제사법재판소(ICJ)도 1969년 “북해대륙붕사건”(North Continental Shelf Case)<sup>61)</sup>에서 국제관습법의 발전에 관하여 조약 적용에 있어서 관련이익이 영향을 받는 국가들의 추후의 관행이 고려될 것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우주관련조약들에서도 조약을 해석할 때는 관련국가들의 추후의 관행들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우주의 평화적 이용조항은 달과 다른 천체에만 적용될 뿐이지 일반적으로 우주전체(outer space in general)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이 조항을 근거로 우주를 통과하여 지구 내 일정지점을 타격하는 핵장착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실험이 방해받지는 않는다고 해석된다. 다시 말해서 ICBM과 지구선회 우주선의 부분궤도폭격체제(FOBS)의 사용이 핵무기와 대량파괴무기를 적재하지 않은 한 금지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있다. 사실 위성공격무기(ASAT)와 탄도미사일방어(BMD)는 금지되지 않고 있으며 미국과 소련이 지금까지 이 두 종류의 무기개발에 관하여는 합법적이라는 견해에 상호 동의해왔고, 소련(러시아 포함)이 비록 우주의 ‘비군사적’(non-military)화를 주장하였어도 사실 미국과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우주에 군사위성을 쏘아 올렸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중국과 러시아가 2008년 2월 12일 유엔총회 군축특별회기(UN General Assembly's Special Session)가 위임한 군축회의(CD)에 제출한 “우주에서의 무기배치와 우주물체에 대한 무력의 위협이나 사용금지조약안”(PPWT)은 우주에

60) 정영진, “우주활동동규범”,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의 공동세미나』 (2015년 4월 30일) 참조.

61) ICJ Rep.1969.

서의 무기배치금지에 일정부분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되나 미국의 동의를 얻을 것 같지는 않다. 동 조약안은 미국의 우주무기개발을 억제하려는 의도가 없다고 볼 수 없으며 최근 중국이 미국과 러시아(구 소련 포함)에 이어 제3의 우주강국으로 등장한 것은 한국을 비롯한 동북아 국가뿐 아니라 전세계에 충격을 주고 있다. “헤이그 탄도미사일 비확산 행동규범”(HCoC)과 “우주활동에 관한 국제행동규범”(ICoC)은 우주의 평화적 이용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규범들이다. 비록 이러한 규범들이 법적인 구속력은 없는 연성법이라고 하더라도 가입국들의 우주개발과 로켓개발이 오로지 평화적으로 사용될 것을 약속하는 규범들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일본이 2008년에 제정한 우주기본법 제2조에 우주개발이용은 ‘일본국 헌법의 평화주의 이념에 따라’ 수행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이러한 규정은 ‘비군사화’로 해석되던 종전의 ‘평화’ 개념이 국내안보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군사적 이용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는 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북한은 계속해서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결의 1718호와 1874호의 명백한 위반행위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 이후 핵무기를 발사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기술을 활용한 어떠한 발사체도 발사할 수 없다는 내용의 대북결의 1718호를 채택한 바 있다. 유엔안보리의 결의는 유엔총회의 결의와는 달리 법적 구속력을 지니고 있는데 국제사회는 북한의 미사일 및 로켓발사에 어떠한 제제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유럽연합(EU)의 마야 코치안치크(Maja Kocijancic) 대변인도 2014년 6월 29일 북한이 동해안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결의 1718호와 1874호의 명백한 위반이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sup>62)</sup>

한국은 2009년과 2010년 두 차례의 실패를 거울삼아 마침내 2013년 1월 30일 자국의 나로호 기지에서 나로호를 발사함으로써 세계에서 11째 스페이스클럽(space club)에 진입하였다. 중국이 이미 제3의 우주강대국에 진입하였고, 일본도 우주기본법을 바탕으로 우주개발의 군사적 이용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북한도 계속된 미사일발사와 함께 러시아와 우주개발협력체제를 모색하고 있는 상황들을 고려해 볼 때 한국의 우주개발은 그 어느 때보다 매우 중요한 시기에

62)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UN안보리 결의 위반...유럽연합, 평화문제연구소 2014년 7월 2일자 참조.



처해 있다. 미국이 소련의 Sputnik 1호 발사로 인한 큰 충격으로 교육제도까지 개혁하면서 우주개발에 성공하였듯이 우리도 우주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교육제도의 검토와 우주개발의 인프라 형성에 전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현재 미래창조과학부가 주도하는 우주개발에 국방부와 공군의 역할을 중시하여 총체적인 국가안보와 관련된 우주개발계획들이 필요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강한철, “인공위성에 대한 군사적 활용 및 통제방안”, 「항공우주법학회지」 제20권 2호, 2005.
- 김종복, 「신우주법」, 한국학술정보(주), 2011.
- 김한택, 「국제항공우주법」, 제2판, 와이북스, 2012.
- 김한택, “우주에서의 핵연료(NPS)사용과 우주법”, 「항공우주법학회지」 제22권 1호, 2007.
- 김한택, “우주조약의 국제법적 의미에 관한 연구”, 「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제28권 2호, 2013.
- 박원화, “우주의 군사적 이용에 관한 법적 고찰”, 「국제법학회논총」 제36권 1호 (통권 제69호), 1991.
- 박원화·정영진, 「우주법」, 제3판, 한국학술정보(주), 2012.
- 박춘호, “우주개발과 통신위성: 국제법의 추이”, 「정보사회연구」 (1990, 봄)
- 박헌목, “우주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경성대학교)」 제22집 1호, 2006.
- 스즈키 가즈토(이용빈 역), 「우주개발과 국제정치」, 한울 아카데미, 2013.
- 이영진, “우주공간의 군사적 이용에 관한 국제법적 규제와 동향”, 「법학연구」 (충북대학교) 제17권 2호, 2006.
- 이창위, 김채형, 김한택, 김현수, 박찬호, 이석용 공저, 「유엔해양법해설서 II」, 사단법인 해양법포럼, 2009.

- Baker Howard A, "Protection of the Outer Space Environment: History and Analysis Article IX of the Outer Space Treaty", *2 Annals of Air and Space Law*(이하 *AASL*), 1987.
- van Bogaert E. R. C, *Aspects of Space Law*, Kluwer Law and Taxation Publishers 1986,
- Bosco Joseoh A, "International Law Regarding Outer Space-An Overview", *55 Journal of Air Law and Commerce*, 1990.
- Cheng Bin, "The 1967 Outer Space Treaty: Thirtieth Anniversary", *23 Air and Space Law*, No.4/5, 1998.
- Cheng Bin, "The Legal Status of Outer Space and Relevant Issues: Delimitation of Outer Space and Definition of Peaceful Use", *11 Journal of Space Law*(이하 *JSL*), 1983.
- Cheng Bin, *Studies in International Space Law*, Clarendon Press·Oxford, 1997.
- Christol Carl Q, *The Modern International Law of Outer Space*, Pergamon Press, 1982.
- Diederiks-Verschoor I. H. Ph and Kopal V, *An Introduction to Space Law*, 3rd revised ed., Wolster Kluwer Law and Business, 2008.
- von der Dunk Frans with Tronchetti Fabio (eds), *Handbook of Space Law*, Edward Elga Publishing, 2015.
- Jakhu Ram, "Legal Issues Relating to the Global Public Interest in Outer Space", *32 JSL*, 2006.
- Jasani, Bhupendra, "Military Use of Outer Space", *27 AASL*, 2002.
- Jasentuliyana Nandasiri, *International Space Law and The United Nations*, Kluwer Law International, 1999.
- Marckoff Marko G, "Disarmament and "peaceful purposes" provisions in the 1967 Outer Space Treaty", *4 JSL*, 1976.
- Matte Nicolas Mateesco, "Treaty of Banning Nuclear Weapons Tests in the Atmosphere in Outer Space and Under Water(10 October 1963) and the Peaceful Uses of Outer Space", *9 AASL*, 1984.

Matte Nicolas Mateesco, “Environmental Implications and Responsibilities in the Use of Outer Space”, *14 AASL*, 1989.

Petras Christopher M, “The Debate over the Weaponization of Space-A Military-Legal Conspectus”, *28 AASL*, 2003.

Qizhi He, “Militarization of Outer Space”, *9 AASL*, 1984.

Wassenbergh H. A, “Speculations on the Law Governing Space Resources”, *5 AASL*, 1980.

## 초 록

1963년 유엔(UN)은 결의로 채택한 ‘우주법선언’의 원칙 4에서 “우주활동은 유엔헌장과 국제법에 따라 국제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서 및 국제협력과 이해를 위해서 행해져야 한다.”고 함으로서 우주의 탐사이용은 군사적 목적이 아닌 ‘평화적 목적’(peaceful purposes)으로 수행되어야 함을 천명하였다. 그리고 1967년 우주조약 제4조와 1979년 달조약 제3조에서 우주의 탐사이용은 1963년 우주법선언과 마찬가지로 군사적 목적이 아닌 ‘평화적 목적’으로 수행되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우주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표현이 정부의 성명서나 여러 다자조약들에서 발견되지만 이 용어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여 아직 명확한 의미가 정의된 바는 없다. 이 글에서는 ‘우주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용어가 국제법상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지를 살펴보고자 하는데, 우선 국제조약에서는 ‘평화적 이용’이라는 용어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 지 알아보고, 우주관련조약들과 결의 및 연성법상 ‘우주의 평화적 이용’의 의미를 분석하여 보았다.

한국은 2009년과 2010년 두 차례의 실패를 거울삼아 마침내 2013년 1월 30일 자국의 나로호 기지에서 나로호를 발사함으로써 세계에서 11째 스페이스클럽(space club)에 진입하였다. 중국이 이미 제3의 우주강대국에 진입하였고, 일본도 우주기본법을 바탕으로 우주개발의 군사적 이용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북한도 계속된 미사일발사와 함께 러시아와 우주개발협력체제를 모색하고 있는 상황들을 고려해 볼 때 한국의 우주개발은 그 어느 때보다 매우 중요한 시기에 처해 있다. 미국이 소련의 Sputnik 1호 발사로 인한 큰 충격으로 교육제도까지 개혁하면서 우주개발에 성공하였듯이 우리도 우주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교육제도의 검토와 우주개발의 인프라 형성에 전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현재 미래창조과학부가 주도하는 우주개발에 국방부와 공군의 역할을 중시하여 총체적인 국가안보와 관련된 우주개발계획들이 필요할 것이다.

**주제어** : 우주의 평화적 이용, 1963년 우주법선언, 헤이그 탄도미사일 비확산 행동규범, 우주활동에 관한 국제행동규범, 평화적 목적

## Abstract

### A Study on the Peaceful Uses of Outer Space and International Law

Kim, Han Tack\*

The term “peaceful uses of outer space” in the 1967 Outer Space Treaty appears in official government statements and multilateral outer space related treaties. However, the examination of the state practice leads to the conclusion that this term is still without an authoritative definition.

As far as the meaning of ‘peaceful use’ in international law is concerned the same phrases in the UN Charter, the 1963 Treaty of Banning Nuclear Weapons Tests in the Atmosphere in Outer Space and Under Water, the 1956 Statute of IAEA, the 1959 Antarctic Treaty, the 1982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the 1968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and the 1972 United Nations Conference of the Human Environment were analysed

As far as the meaning of ‘peaceful uses of outer space’ is concerned the same phrases the 1967 Outer Space Treaty, the 1979 Moon Treaty and the 1977 Convention on the Prohibition of Military or Any Other Hostile Use of Environmental Modification Techniques(ENMOD) were studied. According to Article IV of the 1967 Outer Space treaty, states shall not place in orbit around the earth any objects carrying nuclear weapons or any other kind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install such weapons on celestial bodies, or station such weapons in outer space in any other manner. The 1979 Agreement Governing the Activities of States on the Moon and Other Celestial Bodies repeats in Article III much of the Outer Space Treaty. This article prohibits the threat or use of force or any other hostile act on the moon and the use of the moon to commit such an act in relation to the earth or to space objects. This adds in

---

\* Professor, Kangwon National University School of Law

principle nothing to the provisions of the Outer Space Treaty relating to military space activities. The 1977 ENMOD refers to peaceful purposes in the preamble and in Article III.

As far as the UN Resolutions are concerned, the 1963 Declaration of Legal Principles Governing the Activities of States in the Exploration and Use of Outer Space, the 1992 Principles Relevant to the Use of Nuclear Power Sources in Outer Space(NPS) were studied. And as far the Soft Laws are concerned the 2008 Draft Treaty on the Prevention of the Placement of Weapon in Outer Space and of the Threat or Use of Force against Outer Space Objects(PPWT), the 2002 Hague Code of Conduct against Ballistic Missile Proliferation(HCoC) and 2012 Draft International Code of Conduct for Outer Space Activities(ICoC) were studied.

**Key Words** : Peaceful Use, Peaceful Use of Outer Space, Militarisation of Outer Space, Weaponisation of Outer Space, PPWT, HCoC, ICoC